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동향과 전망

싱가포르의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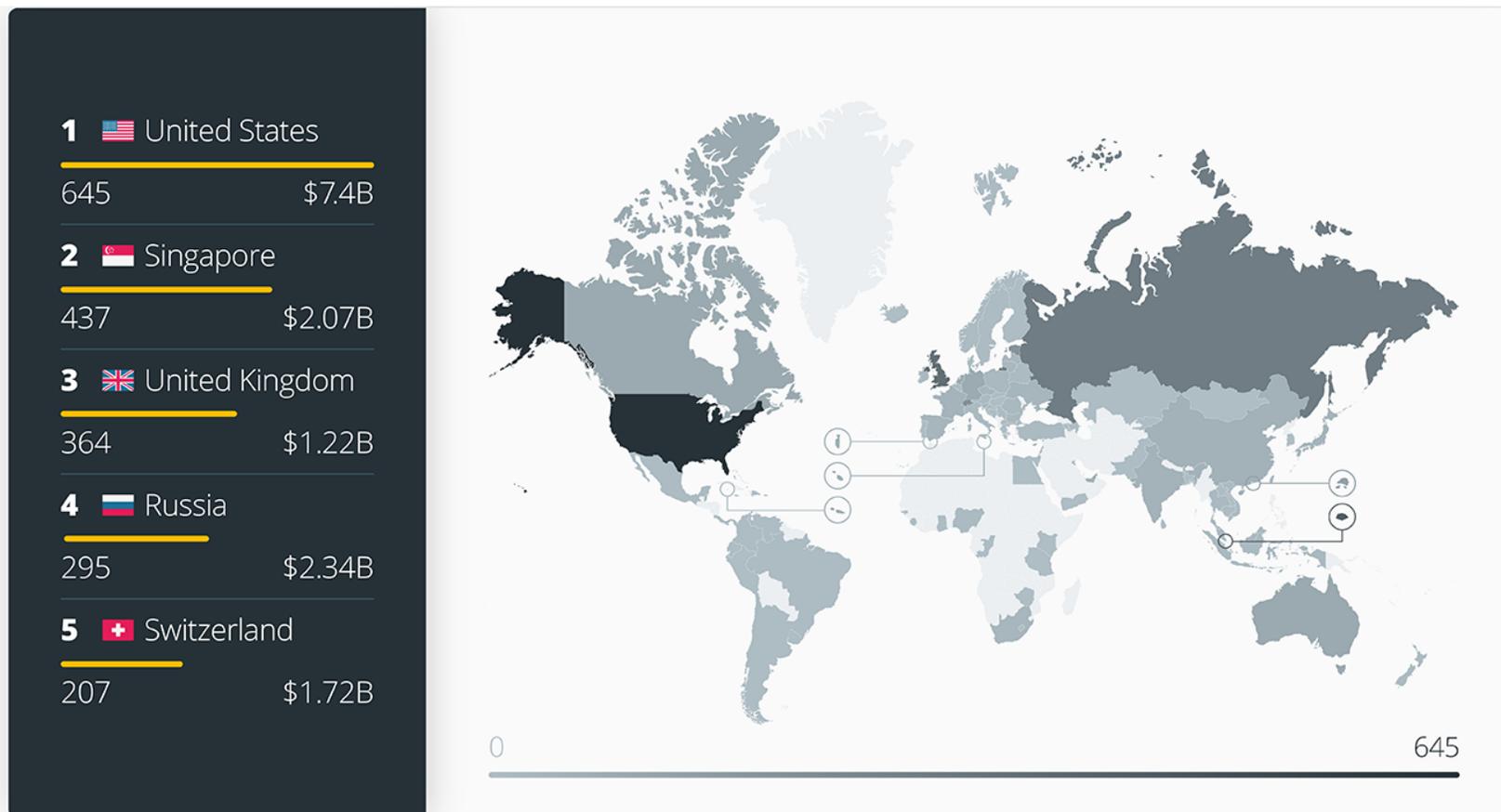
변호사 황혜진

목차

- I. 싱가포르의 ICO 동향
- II.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 III. STO에 대한 규제
- IV. ICO에 대한 규제 동향 (2018 ICO 가이드라인)

I. 싱가포르의 ICO 동향

1. 2015년 8월 이후 전세계 ICO 누적 통계



I. 싱가포르의 ICO 동향

2. 국가별 ICO로 모집된 펀드 규모 (2018년)

Country	Total funds raised	Previous all-time rank	Present all-time rank
 Singapore	\$1.534B	4	3 / ▲ 1
 United States	\$1.222B	1	1 / ● 0
 United Kingdom	\$938M	5	5 / ● 0
 Cayman Islands	\$881M	9	6 / ▲ 3
 Switzerland	\$856M	3	4 / ▼ 1
 British Virgin Islands	\$633M	29	8 / ▲ 21
 Estonia	\$610M	11	7 / ▲ 4
 Hong Kong	\$493M	12	9 / ▲ 3
 Gibraltar	\$304M	15	11 / ▲ 4
 Lithuania	\$258M	21	14 / ▲ 7

II.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기관 및 관련 법안

1. 규제기관

- 싱가포르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2.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 Securities and Futures Act (증권선물법)
-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2018 ICO 가이드라인)
- Payment System (Oversight) Act (지급 시스템 감독법)
- Payment Service Bill (지급 서비스 법안)

III. STO에 대한 규제

1. 증권선물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에 따른 규제

- 발행할 토큰이 증권선물법에 의거 "자본시장상품" (Capital Market Products)에 해당되면, 해당 토큰의 발행자는 싱가포르 증권선물법에 따르는 규제를 받음

2. 증권선물법이 정의한 자본시장상품(제2조 제1항):

- 1) 증권(securities): 주식(shares), 사업신탁증권(unit in a business trust), 채무증권(debenture) 등을 포함
- 2) 집합투자증권(unit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3) 파생계약(derivatives contracts)
- 4) 차입외환거래 목적의 외환계약(spot foreign exchange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leveraged foreign exchange trading)
- 5) 기타 MAS가 자본시장상품이라고 결정하는 상품

III. STO에 대한 규제

3. 2018 ICO 가이드라인이 예시로 들고 있는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

- 1) **주식(shares)**: 토큰이 회사 지분을 부여하거나, 회사 지분을 표상하고 있고, 토큰 소유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책임을 표상하며, 다른 토큰 보유자와의 상호약정을 표상하는 경우 (2018 ICO 가이드라인 2.3.1)
- 2) **채무증권(debenture)**: 토큰 보유자가 토큰 발행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혹은 금전 대여의 약속을 한 경우 (동 가이드라인 2.3.2)
- 3) **사업신탁증권(unit in a business trust)**: 토큰이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된 소유권을 표상할 경우 (동 가이드라인 2.3.3)
- 4) **증권 기반 파생상품(securities based derivative contract)**: 토큰이 주식, 채무증권, 또는 사업신탁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에 해당할 경우 (동 가이드라인 2.3.4)
- 5) **집합투자증권(uni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토큰이 집합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집합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표상하는 경우(동 가이드라인 2.3.5)

III. STO에 대한 규제

4. 규제사항 1: 투자설명서(Prospectus) 등록 등

- 싱가포르에서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을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증권선물법에 기재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투자설명서를 발행하고 MAS에 등록하여야 함 (SFA 제240조, 2018 ICO 가이드라인 2.5)
- 만약 토큰이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SFA 제286조 및 제287조, 2018 ICO 가이드라인 2.6)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투자설명서 발행 및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음
 - ① 소규모 모집(small offer): 12개월 내에 500만 싱가포르 달러(혹은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외화)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에게 토큰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SFA 제272A조 및 302B조)
 - ② 사모(private placement): 증권선물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12개월 내에 50명 이하의 개인을 대상으로 토큰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SFA 제272B조, 제302C조):
 - ③ 기관투자자에 대한 모집(institutional investor):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토큰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SFA 제274조, 제304조)
 - ④ 적격투자자에 대한 모집(credited investors): 적격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토큰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SFA 제275조, 제305조)

III. STO에 대한 규제

* 기관투자자의 정의(SFA 제4A조 제(1)항 제(C)호)

- 정부
- 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주된 활동이 자기소유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거나, 해당 국가의 중앙 정부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거나, 해당 국가의 중앙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외국의 중앙은행, 외국의 중앙 정부
- 싱가포르 은행법(Banking Act)에 의해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
- 싱가포르 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에 따른 금융기관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
- 싱가포르 신탁회사법(Finance Companies Act)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금융회사
- 보험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보험법(Insurance Act)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회사 또는 협동조합
- 자본시장 서비스 라이선스(capital market services license)를 보유한 자
- 인가받은 거래소

III. STO에 대한 규제

* 적격투자자의 정의(SFA 제4A조 제(1)항 제(a)호)

- 순자산이 200만 SGD(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외화)를 초과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수익이 30만 SGD(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외화) 이상인 개인
- 회사의 순자산이 1,000만 SGD(혹은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외화)를 초과하는 법인
- MAS가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자
- 그 외 MAS가 지정한 자

III. STO에 대한 규제

5. 규제사항 2: 자본시장 서비스 라이선스(Capital Market Services Licence) 취득

- 증권선물법에 따라 "규제되는 행위"(Regulated Activity)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본시장 서비스 라이선스(Capital Market Service Licence, CMSL)를 취득해야 함(SFA 제82조 제(1)항)
- "규제된 행위"는 "자본시장상품의 거래"를 포함하며, "자본시장상품의 거래"는 자본시장상품을 인수·매수하는 것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하거나 실제로 인수·매수토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SFA Second Schedule)
- 따라서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을 인수·매수하는 것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하거나 실제로 인수·매수토록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CMSL을 취득해야 함
- 2018 ICO 가이드라인은 1)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운영자, 2)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에 관한 금융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자, 3)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의 운영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CMSL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III. STO에 대한 규제

- CMSL는 법인에게만 부여되며 MAS가 CMSL를 부여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음
 - ① 법인의 경영 전문성 및 재무의 건전성
 - ② 신청 법인은 최소 5년 이상 사업분야 및 관련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였어야 함
 - ③ 신청 법인이 싱가포르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④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경영 및 재무의 건전성
- 신청 법인이 사업분야 및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없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회사의 이사 혹은 대표자로 선임해서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도 있음
- 은행, 금융회사, 보험사와 같이 "규제된 행위"와 관련해 별도의 법률(은행법, 기업 금융법 등)에 의해 이미 규제되고 있는 기업들은 CMSL의 취득이 면제됨

IV. ICO에 대한 규제 동향 (2018 ICO 가이드라인)

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의무 강화
 - ICO를 하는 자는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테러리즘법 [Terrorism (Suppression of Financing) Acts]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정(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에 따라 특정된 개인 또는 단체와 거래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므로, AML 절차를 거쳐야 함.
 - 특히 2018 ICO 가이드라인은 1)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운영자, 2)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에 관한 금융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자, 3)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의 운영자에게 아래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음
 - 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식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② 고객의 실사 및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 ③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인식된 경우, 더욱 강화된 조치 수행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완화
 - ④ 필요 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강화

IV. ICO에 대한 규제 동향 (2018 ICO 가이드라인)

2. 지급 서비스 법안 처리 경과 소개 (Payment Service Bill, PSB)

- MAS는 2017년 11월 21일 지급 서비스 법안을 제안하는 협의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법안이 2018년 11월 19일 발의되었다고 소개함
- 위 법안에 따를 때 회사가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PSB 제7조 1항)
- "지급 서비스"의 목록(PSB First Schedule)
 - ① 계좌 개설 서비스의 제공
 - ② 국내외 송금 서비스의 제공
 - ③ 카드발행은행의 카드 결제 서비스
 - ④ 전자 화폐의 발행
 - ⑤ 가상 화폐 서비스의 제공 (가상화폐의 매매, 거래소의 설립 또는 운영, 기타 MAS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
 - ⑥ 환전 서비스의 제공

IV. ICO에 대한 규제 동향 (2018 ICO 가이드라인)

- “지급 서비스” 라이선스의 종류

- ① 환전 라이선스(money-changing licence): 환전 서비스만을 제공할 경우 (PSB 제7조 제(4)항 제(v)호 및 제(vi)호)
- ② 기본 지급 기관 라이선스(standard payment institution licence): 환전 서비스 외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 서비스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PSB 제7조 제(4)항 제(v)호 및 제(vi)호)
- ③ 주요 지급 기관 라이선스(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ce):
 - 환전 서비스 및 전자 화폐 발행 외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평균 거래량이 300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PSB 제7조 제(5)항 제(a)호)
 - 계좌개설 또는 전자 화폐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평균 계좌에 예치된 전자 화폐 또는 발행된 전자 화폐가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PSB 제7조 제(5)항 제(b)호) 등

IV. ICO에 대한 규제 동향 (2018 ICO 가이드라인)

- 지급 서비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 법은 현행 지급 시스템 감독법[Payment System (Oversight) Act]를 대체하게 됨
- 현행 지급 시스템 감독법에 따를 때 발행하는 토큰이 "가치저장수단"(stored value facility)에 해당하거나, 토큰 발행자가 "지급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토큰 발행자는 MAS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객에 대한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가치저장수단(stored value facility): 사용자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취득한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의 결제수단으로, 사용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저장된 가치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사용자가 아닌 저장된 가치의 보유자가 지불하는 현금 이외의 수단
- 저장된 가치(stored value):
 - ① 가치저장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예정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선지급한 금액으로
 - ② 가치저장수단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이용 가능한 금액이면서
 - ③ 가치저장수단의 보유자가 보유한 금액을 의미함

IV. ICO에 대한 규제 동향 (2018 ICO 가이드라인)

- 지급 시스템(payment system): 자금 이체 및 화폐의 유통을 촉진하는 시스템 및 위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수단과 절차
- ICO를 진행한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급 시스템 감독법 상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음
 - ① 지급 시스템 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치저장수단"에 "저장된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대가로 미리 지불된 "현금"을 의미하므로 암호화폐로 토큰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토큰을 가치저장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단, 토큰을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급 시스템 감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② 지급 시스템 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시스템"은 현금의 유통과 이체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므로, ICO 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www.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황혜진

02 2051 1872
010 3445 3821
hjh@dlightlaw.com